# 오산시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조례

제정 2015년 11월 16일 조례 제1424호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」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및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오산시에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·발전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바르게살기운동 조직”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오산시협의회와 그 회원단체(동 위원회를 포함한다)를 말한다.
2. “바르게살기운동 회원”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오산시협의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.
3. “바르게살기운동 사업”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.

**제3조(보조금 지원 등)** 오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및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「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」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
2. 바르게살기운동 캠페인 및 대국민 의식개혁 교육 사업
3. 독거노인, 다문화가족, 가정위탁보호아동, 한부모가족 등 소외계층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지원 사업
   가. 반찬 지원 사업
   나. 사할린 한인 이주자 지원 사업
   다. 그 밖에 소외계층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4.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**제4조(지원신청 및 정산보고)** ①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이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보조금을 사용한 후에는 「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의 규정에 따

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지도감독)**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,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.

**제6조(포상)** 시장은 바르게살기정신을 계승·발전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및 회원에 대하여 「오산시포상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**제7조(준용)**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보조금 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「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**제8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**부칙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